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은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2759 발의연월일: 2024. 8. 13.

발 의 자:조은희·이성권·박정하

신성범 · 서지영 · 이달희

최수진 • 이만희 • 김상욱

김용태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119구급대원의 출산, 육아휴직 등 장기간 공백 시 일정 자격을 갖춘 사람을 기간제근로자로 고용하여 해당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기간제근로자가 119구급대원의 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문제가 있음.

이에, 119구급대의 정의에 기간제근로자를 포함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119구급대원이 마음 편하게 출산과 육아를 하고 기간제근로자가 119구급대원의 역할과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2조제4호).

법률 제 호

119구조 · 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소방공무원으로"를 "소방공무원 및 「기간제 및 단시 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근로자로"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119구급대"란 구급활동에	4		
필요한 장비를 갖추고 <u>소방</u>	<u>소방</u>		
<u>공무원으로</u> 편성된 단위조직	공무원 및 「기간제 및 단시		
을 말한다.	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		
	률」에 따른 기간제근로자로		
5. ~ 12. (생 략)	5. ~ 12. (현행과 같음)		